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2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정태호·안도걸·강준현

이학영 · 이연희 · 이기헌

이수진 • 조계원 • 이재정

한병도・조 국・조인철

위성곤 • 김선민 • 서영석

황 희 • 유건영 • 오세희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(이하 "촉진지구"라 함)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.

그런데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'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'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, 특히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의 벤처기업,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

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제18조의5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의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	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		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		
	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지		
	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		
	<u>여야 한다.</u>		